

예 산 총 칙

제1조 :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218,711,918	6,561,358
1. 일반회계	210,063,908	6,301,917
2. 특별회계	8,648,010	259,441
의료보호기금	693,534	20,806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1,545,364	46,361
주차장	4,975,652	149,270
주거환경개선사업	148,760	4,463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540,000	16,200
기반시설사업	480,106	14,403
지하수관리	260,694	7,821
재정비축진	3,900	117

제2조 :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4,127,449천원으로 한다.

제4조 : 지방재정법 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